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4월 4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및 내용을 반영하고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후 · 불량건축물 기간 변경(재건축 연한 40년 → 30년) (안 제3조)
- 정비구역 등의 해제 세부기준 마련(안 제9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최고층수 신설(15층 이하)(안 제9조의 2)
- 기간만료 조항삭제(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안 제14조)
-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신설(안 제22조)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기준 및 대상 신설(안 제26조의2)
- 공공지원의 정보공개 방법 및 내용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48조)
- 기금의 보조금 및 융자금 최고한도 증액(안 제59조)
- 기타 상위법개정 내용 반영 및 용어 및 문장 등 정비

3. 검토의견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안 제2조(정의)는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용하는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임.
- 안 제3조(노후 · 불량건축물)는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서 노후 · 불량건축물을 준공된 이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 내에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준용함.
- 안 제6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제6호는 시행령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서 규정한 사항이므로 삭제함.
- 안 제7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제3항은 시행령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제1항제5호에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서내용인 “다만, 국·공유지는 동의자 수 및 동의 면적에서 제외한다”를 삭제함.
- 안 제9조(정비구역 등의 해제)는 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제4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하는 사항임.
- 안 제9조의2(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는 영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용도 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층수제한 및 산정방법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임.

- 안 제10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는 조례 문구를 정비하고 안 제11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는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임.
- 안 제11조의2(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는 법 제8조제8항제2호 및 영 제27조의2제2호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정보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 안 제13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법률 제11293호, 2012. 12. 1.) 제2조(유효기간)에 따라 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2016년 1월 31일까지 유효하므로 동 조항을 삭제함.
- 안 제14조(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법률 제11293호, 2012. 2. 1.) 제2조(유효 기간)에 따라 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제2항은 시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므로 삭제함.
- 안 제15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는 법 제50조의2에 의거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고시가 있은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
- 안 제15조의2(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는 법 제21조(조합의 임원) 제6항에 의거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 안 제16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제5호는 법 제32조에 따라서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변경으로 인하여 입주자의 편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단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
- 안 제17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제3항제3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법률 제12989호, 2015.1.16.)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의거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 관련 공제조합을 ‘건설공제조합’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제조합’으로 명칭을 정비함.
- 안 제18조(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용 등 용도)와 안 제19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는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인용조항을 정비함.
- 안 제20조(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행)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임.
- 안 제22조(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은 법제처 조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임.
- 안 제23조(주택공급 기준 등)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는 법 제50조의2(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에 의거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단독 또는 다기구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정비구역의 고시가 있은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함.

- 안 제24조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은 조례에 다시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 조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삭제함.
- 안 제26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는 법 제67조의2(공동 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제2항에 의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목적의 기준, 면제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 안 제29조(구성)은 법제처 조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법에 규정되는 않은 공무원 위원 정수를 규정하는 것은 위촉권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괄호 부분은 삭제하고
- 같은 조 제3항제3호는 위원 요건과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만 기준을 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내용임.
- 안 제42조(공공지원 대상사업)는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임.
- 안 제43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안 제44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안 제46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안 제47조(위탁관리자의 지정 등), 안 제49조(자료의 제출)도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공공 관리자”를 “공공지원자”로 변경하는 내용임.
- 안 제48조(공공관리의 정보공개)는 법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 지원자 정보공개)제6항에 의거 시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의 공사비와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의 방법, 시기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50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제2항은 예산과의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재원을 당초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에서 “전년도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최소 비율로 조정하여 변경함.
- 안 제51조(기금의 용도)는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안 제56조(기금의 보조·융자의 신청)는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임.
- 안 제57조(융자조건)제2항인 융자금의 이자율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영 지침을 마련하거나 세부 시행규칙에 이자율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9조(기금의 보조 및 융자금액)은 정비구역 당 보조금과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최고한도를 당초 “7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정비 기반시설(도로, 공원) 보조금을 당초 “조성공사비의 50퍼센트와 5억원 중 적은 금액”에서 “조성공사비의 50퍼센트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상향하는 내용임.(타시 보조금 지급 규정 및 사례조사 별도 배부)
-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조례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되나, 안 제57조(융자조건)에서 융자금의 이자율에 대한 부분은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안 제59조(기금의 보조 및 융자금액)에서 보조금액이 상향되는 만큼 기금 집행 및 정산 등의 절차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1부.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4월 4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된 법률명 및 조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명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사항을 관계 조항에 반영함(안 제1조, 제4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이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현행 제1조, 제2조).

3. 검토의견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안 제1조(목적) 및 안 제2조(구성)는 상위법령의 제명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위원회 명칭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되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임.

- 안 제4조(심의사항)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간사등), 안 제10조(소위원회), 안 제13조(회의의 비공표)는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임.
- 동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의 반영과 일부 조례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됨.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1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주미희 의원 등 9인이 발의하여 4월 4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후(老朽) · 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가 가능하도록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계식 주차장 철거 기준 완화 (안 별표 5)

3. 검토의견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안 [별표 5]는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로서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와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를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를 인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 당초에는 2008. 1. 1. 이전에 설치된 2단식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완화기준을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만 한정하였으나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되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이용실태 등 점검을 통하여 미 사용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1부.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4월 4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정이유

-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대행업체 간의 자발적 선순환 경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가의 원칙 규정(안 제4조)
- 평가실시 규정(안 제7조)
-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9조)
- 평가결과의 통지(안 제10조)
- 평가결과 조치 규정(안 제11조)
- 평가결과의 공개 규정(안 제13조)

3. 검토의견

-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안 제7조(평가실시)제3항에서 “제2항에 따른 평가종류별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로 규정하여 제2항의 규정이 평가종류별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을 정하는 규정인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제2항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평가종류별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0조(평가결과 통지)제2항에서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출된 의견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의 시행 방침 또는 세부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의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계약 방식과 관련 하여는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공개경쟁입찰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1부.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4월 4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개정으로 지중 정착장치(어스앵커), 태양광설비,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설치에 대한 점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으로 점용료 분납 시 종전에는 점용료 50만원초과 시 년6%의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점용료를 100만원 초과로 하고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점용료 :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별표 1 (제3조 관련) 준용
- 태양에너지설비 점용료 :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제14조 제6항 준용
-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설치 점용료 : 현 조례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점용료 징수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를 분할 납부 할 경우 점용료를 100만원 초과로 하고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 고시이자율의 산정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규정 제20조

3. 검토의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대상 신설과 점용료 분할 납부 이자 산정기준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안 제4조(점용료 납부방법)은 도시공원 점용료의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기준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의거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함.
- 안 [별 표1]은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태양에너지설비에 대하여 도시공원 점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나, 태양에너지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시공원 내에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태양광에너지설비의 설치와 관련 하여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조례 운영의 세부적인 기준(방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1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4월 4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시화MTV 주차장은 2021년 주차수요 예측결과 주차장 확보율은 23%에 불과하여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화 MTV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종사자 및 내방객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며,
- 현재 시화MTV내 산업, 물류용지를 포함한 대부분 용지가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공장이 계속해서 입주하고 있어 이미 도로상의 불법 주차로 대형차량 통행에 큰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 불법주정차로 인한 도로용량 감소 및 통행속도 저하 등이 가시화 됨에 따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간접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장 조성원가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시화MTV단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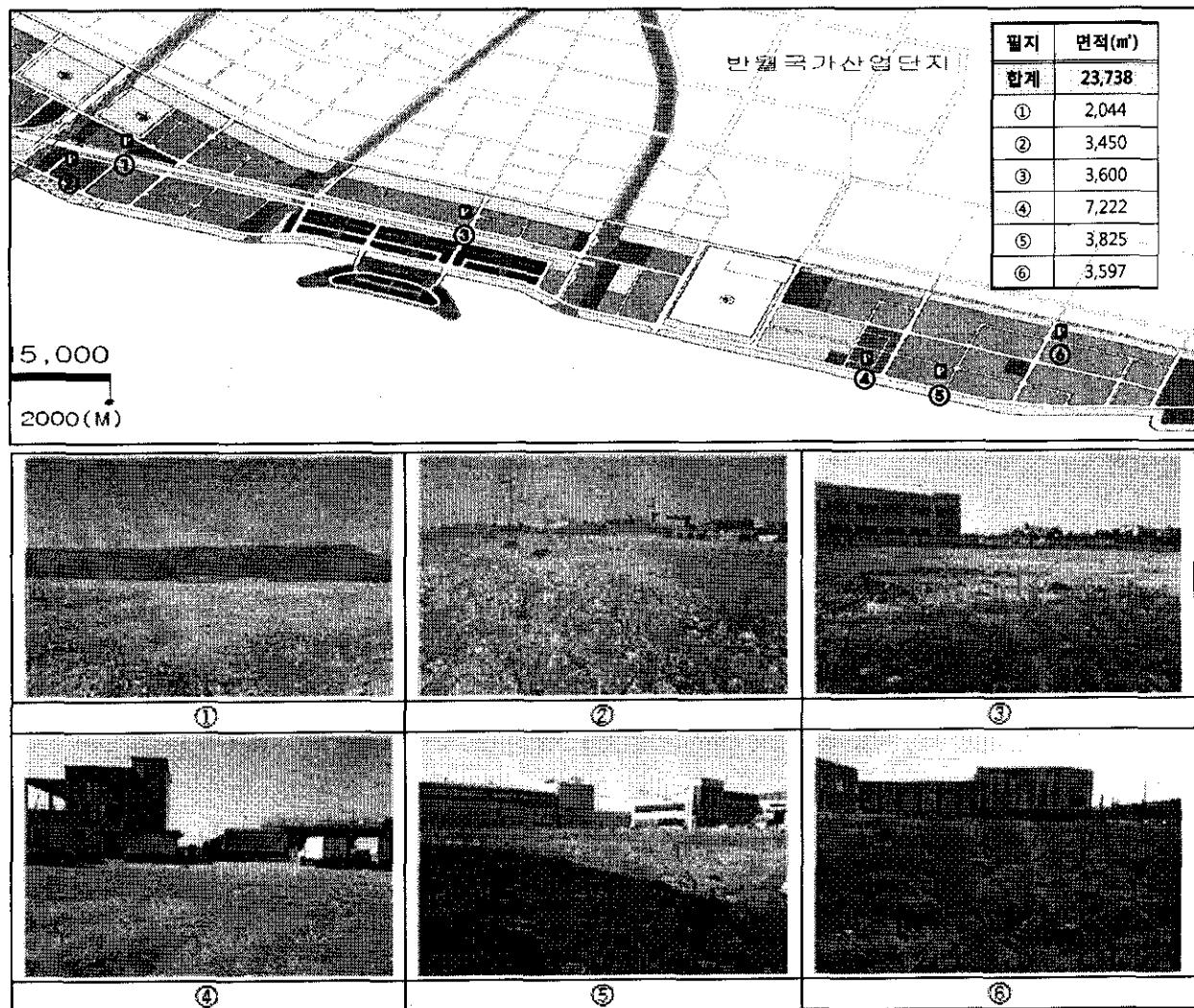
〈 시화MTV 주차장부지 매입 추진 〉

- 주차장 : 6개소 23,738m², 지평식 주차기준 약 1,080대분
- 소요예산액 : 약 15,943백만원

(단위 : 원)

필지 번호	면적 (m ²)	분양예정가①	조성원가② (매입금액)	예산절감액 (②-①)	비 고
합계	23,738	20,932,542,200	15,943,176,660	- 4,989,365,540	
①	2,044	1,982,066,800	1,372,813,760	- 609,253,036	분양예정가
②	3,450	3,345,465,000	2,317,126,950	- 1,028,338,050	분양예정가
③	3,600	2,766,600,000	2,417,871,600	- 348,728,400	분양예정가
④	7,222	7,003,173,400	4,850,519,080	- 2,152,654,318	분양예정가
⑤	3,825	2,972,025,000	2,568,988,570	- 403,036,425	분양예정가
⑥	3,597	2,863,212,000	2,415,856,700	- 447,355,293	분양예정가

○ 위치도



〈 주차장 매입 사유 〉

- 시화MTV 입주기업체의 부설주차장(법정주차대수) 외 기업체 종사자 및 내방객 비중이 높아 도로상 불법 주정차 문제, 교통 불편야기 등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 주차장 부지의 경우, 만약 민간에 공개입찰 일반분양 시 사업성 결여로 분양 후 공영주차장 용도로 운영되지 않아 주차난 가중의 우려가 있는 바
- 개발완료 후 예측되는 주차문제 해결과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 시에서 수자원공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지정된 노외주차장 용지를 조성 원가 수준에 매입 후 공영주차장으로 효율적 운영관리가 필요함.

3. 검토의견

- 시화 MTV 내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부지 6개소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시화MTV 조성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시화 MTV 주차 수요를 보면 법정주차대수는 11,720대이고 2021년 장래 주차수요는 50,329대로 38,609대가 부족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 마련은 필요한 과제임.
- 시화 MTV 주차장 매입 예정부지는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확보하여야 할 노외주차장 12개소 중 6개소에 해당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무상 귀속 되는 공공시설 중 주차장과 운동장은 96년 12월 31일 공장용지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고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에서 제외되었으나,

- 입주기업체와 내방객의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공공 기반시설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안산시가 유지·관리하는 조건으로 무상 임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시하는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 주차난 문제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주차난 해소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4월 4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통하여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적자 수지를 개선하고 노후 된 하수도 시설개선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 현행 조례중 상위법과의 불일치 규정을 정리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하수도 사용료 인상(별표 1)
 - 2017년 7월부터 평균 7% 인상·반영
- 준용 규정 신설(안 제30조)
 -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안산시 수 도급수 조례」 준용 규정 신설(제30조)
- 하수도법에 따라 변경된 용어로 개정(안 제3조, 제6조 및 제22조)
 -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차집관거”를 “차집관로” 개정
-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여 통합(안 제6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제12조 및 제16조)
 - “선납하도록”을 “미리 내도록”으로 정비

3. 검토의견

-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통한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적자 수지의 개선과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안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6조(하수관로의 준설 등), 제12조(시장의 공사시행),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6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는 상위법령과 불일치 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임.
- 안 제30조(준용)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아니라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 안 별표 1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 7% 인상하는 내용임.
-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불일치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용어를 정비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인상하는 사항으로 특이점은 없으나 노후 하수도 관로 등 하수도 시설개선을 위한 재원을 년차별로 정확하게 진단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1부.